

위 임 장

본인은 2024년 6월 14일(금)에 개최되는 제2024-1차 한국지급결제학회 정기총회에서 본인의 의결권을 한국지급결제학회장에 위임합니다. (정관 제14조 ④항 의거)

제14조(총회)

④ (중략)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2024년 월 일

회 원 : (인)

사단법인 한국지급결제학회장 귀하